

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4. 5. 22.>

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(제4조제1항 관련)

구분	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	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
1. 태풍주의보 · 태풍경보 · 풍랑경보	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 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 으로 한정한다)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 고 경보를 청취할 것
2. 풍랑주의보	총톤수 15톤(태풍 으로 인한 풍랑주 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) 미만인 어선 의 출항 및 조업 제한	
3. 폭풍해일주 의보 · 폭풍해 일경보	-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 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 양경찰관서 함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 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 으로 한정한다)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 고 경보를 청취할 것

비고

1.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
예상 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.
2.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
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
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.
3. 안전본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기상특보의 내용과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
수사항 등을 1시간마다 방송하여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이 신속히 대피하도록
해야 하며, 어선의 대피 상황을 4시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필요
시 해양경찰서, 시·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